



표준번호 : DMS-P178

상위표준 : 해당표준 없음

## 이사회 운영규정

### 이 력 사 항

REV.NO.	제·개정일자	개 정 사 유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일 자	일 자	일 자
0	2015.04.01	최초 작성			
1	2017.05.30	신규차입 안전상정에 관한 기준 보완			
2	2018.10.24	조문 및 조항 정비			
3	2020.06.24	조문 및 조항 정비			
4	2020.07.24	조문 및 조항 정비			
5	2021.02.22	조문 및 조항 정비			
6	2021.10.29	조문 및 조항 정비			
<b>7</b>	<b>2025.03.20</b>	<b>조문 및 조항 정비</b>			
8					
9					

## 목 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 범위

제 3 조 권한

**제2장 운영**

제 4 조 구성

제 5 조 의장

제 6 조 종류

제 7 조 소집권자

제 8 조 소집절차

제 9 조 결의방법

제 10 조 부의사항

제 11 조 감사의 출석 등

제 12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 13 조 경영임원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제 14 조 의사록

**제3장 보칙**

제 15 조 사무국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의결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임원(회사의 경영 목적상 이사와 동등한 직위를 가지고 사실상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이상의 임원)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제2장 운영

###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회결의로 정한 자의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 중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년 6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 횟수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자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자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결의로 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타 회사가 당해 회사를 인수, 합병하려 할 경우(내, 외국인 포함)

표 준 번 호	DMS-P178
제·개 정 일 자	2025.03.20
개 정 번 호	7
페 이 지 수	4/8

이사회 운영 규정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3.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기타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타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타 이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자본의 감소
    -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6) 주식의 소각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4) 이사 및 감사의 보수
    -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への 보고
    -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경영계획 포함)
    - 2)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 6)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제·개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운영 규정 개폐
    - 10) 이사회 운영 규정 제·개정
    - 11) 내부회계 관리규정 제·개정
    - 12) 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3. 재무 등에 관한 사항
    - 1) 주식 등(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표 준 번 호	DMS-P178
제 · 개 정 일 자	2025.03.20
개 정 번 호	7
페 이 지 수	5/8

## 이사회 운영 규정

- 2) 사채의 발행 및 모집
- 3) 준비금의 자본전입
- 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소각
- 5) 직전사업년도 말(이하 동일 적용)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소송의 제기
- 6)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7)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8)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
- 9)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보증행위
- 10)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금전의 대여
- 11) 건 별, 연결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차입
- 12)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4. 기타사항

- 1)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의(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 2)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또는 경영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내부회계 운영실태 및 결과
3. 의결사항 집행결과 및 위원회 활동 실적
4. 경영계획 대 실적 현황 (분기1회)
5. 주요 자회사 및 손자회사(증손회사도 포함)의 경영계획 대 실적 현황 (분기1회)
6. 상장회사 공시(신고 및 보고)사항 및 중요 경영상황의 발생 - 별표 1 참고
7.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제10목의 차입거래 이외의 차입
8.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감사의 출석 등)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 (이사 및 경영임원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임원이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이사 및 경영임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의사록)

표 준 번 호	DMS-P178
제·개 정 일 자	2025.03.20
개 정 번 호	7
페 이 지 수	6/8

## 이사회 운영 규정

- ① 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 및 보고 사항에 관한 안건은 의사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한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장 보 칙

#### 제15조 (사무국)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등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력 부서를 운영하거나 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끝-

#### <부표 및 표준양식>

※별표 1. 공시사항 및 중요 경영사항

- ① 상장회사 공시사항 및 그 외 중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획부서는 발생 또는 인지 즉시 이사회 참석대상자에게 보고한다.
- ② 법령 및 거래소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별표 1 내용의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구분	항목	기준
당해회사에서 발생한 공시사항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연결매출액 5% 이상
	주요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연결매출액 5% 이상
	단일판매계약 체결/해지	연결매출액 5% 이상
	제품 수거/파기 결정	연결매출액 5% 이상
	생산중단/재개	연결매출액 5% 이상
	증자 결정	결정시
	감자 결정	결정시
	이익소각 결정	결정시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결정시
	주식분할(액면분할) 또는 병합	결정시
	CB, BW 등 발행 결정	결정시
	상장폐지 결정	결정시
	어음의 위/변조사실 확인	사실 확인시

표 준 번 호	DMS-P178
제 · 개 정 일 자	2025.03.20
개 정 번 호	7
페 이 지 수	7/8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별도공장신설 등	연결자기자본 10%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처분	연결자산총액 5% 이상
타법인주식, 출자증권의 취득/처분	연결자기자본 5% 이상
출자법인의 부도, 회생절차 등	연결자기자본 5% 이상
단기차입금 증가(연장, 상환목적 제외)	연결자기자본 10% 이상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결정	연결자기자본 5% 이상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결정	연결자기자본 5% 이상
피보증(담보)법인의 부도, 회생절차 등	연결자기자본 5% 이상
사채 원리금 미지급(누계기준)	연결자기자본 5% 이상
선급금 지급 또는 금전/증권대여 결정	연결자기자본 5% 이상
재해발생	연결자산총액 5% 이상
벌금, 과태료, 과징금, 추징금 등	연결자기자본 5% 이상
임직원 횡령/배임확인	연결자기자본 5% 이상
파생상품거래손실 발생(누계기준)	연결자기자본 5%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수령시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사실 확인시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변동	각 30% 이상
주식배당 결정	결정시
현금, 분기, 중간배당 결정	결정시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결정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사실 확인시
감사(임기만료 사유 외) 중도퇴임	퇴임시
최대주주 변경	사실 확인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결정시
주식교환/이전 결정	결정시
영업양수도 결정	결정시
합병/분할 결정	결정시
주주총회 소집 결정/결과 보고	결정시
부도, 은행거래정지 등	사실 확인시
회생절차 개시/종결 등	사실 확인시
해산 사유 발생	사실 확인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회생절차 관련	사실 확인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 체결	사실 확인시
증권발행,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	사실 확인시
증권집단소송	사실 확인시
그 외 소송 제기	연결자기자본 5% 이상(大 2.5%)
주식교환·이전이 결정된 종속회사 자산규모가	연결자산총액 5% 이상



경영 >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규정

표 준 번 호	DMS-P178
제 · 개 정 일 자	2025.03.20
개 정 번 호	7
페 이 지 수	8/8

주요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공시사항  *주요종속회사 : 종속회사의 별도 자산총액이 당해회사 별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일 경우 해당	분할·합병·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종속회사 자산규모가	
	해외시장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된 종속회사의 자산규모가	
	부도발생,당좌거래 정지 등이 발생한 종속회사 자산규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종속회사 자산규모가	
	주채권은행 구조조정 조치된 종속회사 자산규모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종속회사의 자산규모가	
모든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공시사항	정지된 해당 영업부문의 매출액 규모가	연결매출액 5% 이상
	자본의 증가(감소) 금액이	연결자기자본 5% 이상
	지배회사에 대한 교환사채(EB) 발행시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셋 중 하나) 발생 시	(아래 참조)
	i) 양수도대상 영업부문 자산금액이	연결자산총액 5% 이상
	ii) 양수도대상 영업부문 매출액이	연결매출액 5% 이상
	iii) 양수도대상 영업부문 부채금액이	연결부채총액 5% 이상
	중요한 자산양수도 발생 시 해당가액이	연결자산총액 5% 이상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한 풋백옵션계약 체결시	양도자산규모가 연결자산총액 5% 이상	
증권관련 중대한 소송제기 시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연결자산총액 5% 이상	
그 외 중요 경영사항 (당해회사 및 모든 종속회사 포함)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및 환입	연결자기자본총액 5% 이상
	충당금 및 충당부채의 전입 및 환입	연결자기자본총액 5% 이상
	자본잠식	자본잠식 발생 시